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207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20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1 선고 2018가단2394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천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지선

변론 종결2019. 9. 4.

판결 선고2019. 10. 23.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1. 선고 2018가단239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4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17. 광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3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2017. 12. 26. 02:12경 이 사건 점포 주방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건물 내 인접 점포('G')가 일부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8. 3. 30. C에게 보험금 43,944,520원(= 이 사건 점포 부분 손해액 40,882,721원 + 'G' 점포 부분 손해액 3,061,799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기광주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

□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주방 튀김기 옆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 및 튀김기가 소실되었으며, 창문 문틀 및 상부 덕트 우측부가 심하게 소실되고 주변으로 연소 진행된 방향성이 식별된 점으로 미루어, 주방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 부근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며, 연소과정에서 옆 점포 샌드위치 패널로 일부 연소 진행됨

□ 발화요인: 전기적 / 분전반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발화추정

□ 화재원인 검토

- 전기적 요인: 주방 튀김기 옆 내벽에 설치된 분전반 주차단기는 외부가 소실·소락되어 식별되었으며, 분기된 배선용 차단기 등이 심하게 소실되고 전선에서 다수의 용융흔이 식별된 점으로 미루어, 분전반 배선용 차단기 전선부에 장시간 사용 및 튀김기 열·연기 등에 의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불꽃이

발생하며 전선피복 및 주변 튀김기 식용유 등 가연물에 점화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기계적 요인: 튀김기 전원선은 벽면 하단부 콘센트에 접속된 상태로 조작부는 소실되어 식별되었으며, 튀김기 내부는 화재로 인한 변색흔이 식별되고 발열부는 검게 탄화물이 부착되어 식별된 점으로 미루어, 튀김기 식용유 과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조작부 등이 심하게 소실되어 발화요인으로 추정할 물증을 식별치 못하여 논단 불가함
- 방화, 가스누출, 부주의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음

□ 결론

- 호프집 주방 집기품 및 분전반 등이 소실되었으며 주방 내부 튀김기 옆 분전반 부근에서 주변부로 연소 진행된 방향성이 식별되고, 주방 튀김기 옆 내벽에 설치된 분전반 주차단기는 외부가 소실·소락되어 식별되었으며, 분기된 배선용 차단기 등이 심하게 소실되고 전선에서 다수의 용융흔이 식별된 점으로 미루어, 분전반 배선용 차단기 전선부에 장시간 사용 및 튀김기 열·연기 등에 의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불꽃이 발생하며 전선피복 및 주변 튀김기 식용유 등 가연물에 점화 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작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발화장소

- 주방 내 튀김을 튀기는 기계부위 소훼정도가 심함
- 튀김기 옆 벽면에 차단기는 모두 소훼되어 있음
- 튀김기 주변으로 확산흔이 보이며 홀 내부는 그을음만 있는 상황임

□ 감식사항

- 차단기가 종종 내려갔다는 피해자 진술
- 튀김기 배전반 전선 부위 일부 단락흔이 보임

□ 감식의견

- 피해자의 진술 및 노화된 건물상황, 연소형태 등으로 보아 튀김기 주변 배전반 주위에서 전기적 현상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상황임

[인정 근거] 다통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 광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점포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43,944,5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책임 유무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동안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에서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포 주방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과 내부 차단기 부근에서 발화하였고 그 직접적 원인은 분전반 배선용 차단기 전선부의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며, 달리 이를 뒤집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 주방에 설치된 분전반 및 그 내부의 전기배선은 이 사건 점포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임대인인 C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C가 위와 같은 분전반 내부의 하자를 제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4, 34호증,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분전반 및 차단기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점포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반환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점포 주방에 설치된 분전반과 차단기는 피고의 임차 이전부터 건물 소유자인 C에 의하여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피고는 분전반 및 튀김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분전반 내부 전선을 수리하거나 기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분전반 바로 옆에 있는 튀김기의 전원선 코드는 분전반에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벽면에 있는 별도의 콘센트에 접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 내벽에 설치된 차단기와 분전반에 연결된 전선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벽체 내부에서 콘센트를 통하여 외부 전기시설과 연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화재현장조사서(갑 제2호증)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차단기 연결 전선들은 모두 이 사건 점포 벽체 내부에 설치되어 차단기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③ C는 이 사건 화재 이전부터 매월 1차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점검을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벽체 내부의 전선까지 점검대상이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위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주방 내 튀김기 사용 시 발생하는 열·연기가 배전반 내 차단기 전선부 절연열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튀김기는 피고의 임차 이전부터 설치된 것인데, 위 전기점검 결과에서도 튀김기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 위 튀김기는 평소 닭 1~2마리를 튀기는 데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주문이 없어 사용되지 않았던 점,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전선에 튀김기의 열이나 연기가 직접 닿아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튀김기 사용이 이 사건 화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⑤ 피고의 시어머니 H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틀 전인 2017. 12. 24. 분전반 내부 차단기 중 간판용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간판 조명이 꺼진 것을 목격하고 이 사건 화재 당시까지 간판용 누전차단기를 내려둔 채 영업을 하였는데, 이를 C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분전반 내에는 용도별 차단기가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간판용 누전차단기의 이상을 알고도 이를 C에게 알리거나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전반 내 전기배선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불법행위책임 유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관리·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인 C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인 분전반 내 전기배선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화석

판사정철민

판사마은혁